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경 상 남 도
(사회혁신추진단)

목 차

I.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1
II. 2021년 추진실적	3
III.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	6
IV. 세부 운영계획	9
1.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	9
[1]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10
① 도정참여형	10
② 도-시군연계협력형	12
③ 청년참여형	13
④ 생활안전형	15
[2]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16
2. 일반참여예산사업 운영	19
3. 기타 세부 운영사항	19
V. 향후 추진일정	24
VI. 행정사항	25
[붙임 1~6]	26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 전 과정에 실질적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입니다.

I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운영개요

○ 참여방법

-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도민투표를 통한 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등

○ 주요내용

- 주민 제안사업 공모 : 연중 ※ 집중 공모기간 : 3 ~ 5월
- 사업점검단 운영 및 주민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100명*, 임기 2년(연임 가능) * '23년부터 150명까지 가능

○ 추진일정

사업공모	타당성검토	예산기구심사	총회(도민투표)	주민의견서작성	사업점검
전도민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 및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업점검단 사업부서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법령·조례, 중복여부 등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총회 상정 사업 선정	온·오프라인 투표 및 최종 선정	도의회 제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점검
3~5월	3~6월	6~7월	8월	9~11월	9~12월

□ 운영현황

편성연도	공모규모 (백만원)	접수		예산반영(접수대비)	
		건	금액(백만원)	건	금액(백만원)
2019년	5,200	121	18,868	61(50%)	5,062(27%)
2020년	13,000	352	82,209	114(33%)	12,461(15%)
2021년	13,000	456	96,540	111(24%)	14,554(15%)
2022년	17,000	474	85,628	157(33%)	15,267(18%)

□ 추진연혁

- 2009년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2010년 ~ 2017년 : 분야별 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개최
- 2011년 : 도민예산학교 운영
- 2012년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2012. 12월)
- 2018년 : '19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규모 : 52억원)
- 2019년 : '20년 예산편성 공모사업 추진(공모규모 확대, 130억원)

• **경남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회혁신추진단으로 업무 이관**(예산담당관실→사회혁신추진단)
 ⇒ 주민제안사업 공모규모 2배 확대, 도민역량 강화와 관심유발을 위한 도민예산교육 확대(8회→20회)

- 2020년 : '21년 예산편성 공모사업 추진(창년참여형 신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 2021년 : '22년 예산편성 공모사업 추진(공모규모 확대, 170억원)
 - * 기존 지역주도형에서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변경, 사업비 대폭 확대
('20년 10억 원<지역주도형> → '21년 60억 원<주민자치형>)
 -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11.4.)

II 2021년 추진실적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 주민참여예산 연간운영계획 수립 : '21. 3. 29.
- 주민참여예산 집중 제안 : '21. 3. 31. ~ '21. 5. 21.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총 28회) : '21. 4 ~ 9월

총횟수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회	모니터링단회의
28회	1	18	4	4	1

- 도민예산학교 운영(총 20회, 311명) : '21. 4. 27. ~ '21. 11. 22.

- 도민투표(최종 사업 선정 9.28.) : '21. 9. 13. ~ '21. 9. 24.

- 도민투표 결과 : 3,398명(도민 3,355, 주민참여예산위원 43)

* 연도별 참여자 : '20년 1,397명 → '21년 1,367명 → '22년 3,398명(149% ↑)

- 도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 '21. 11월 ~ '21. 12. 14.

- 157개 사업, 15,266,795천원(도비 8,582,315, 시군비 6,642,480)

유형		공모규모(단위:천원)			최종 선정결과(단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사업 건수	금액			
총계		17,000,000	10,400,000	6,600,000	157	15,266,795	8,582,315	6,642,480	
도 민 주 도 형	도정참여형 (50억)	5,000,000	5,000,000	-	18	3,908,575	3,908,575	0	
	도시군연계형 (50억)	5,000,000	2,000,000	3,000,000	29	5,778,000	2,294,400	3,441,600	자부담 42,000
	청년참여형 (10억)	1,000,000	1,000,000	-	7	965,420	533,420	432,000	
주민자치형(60억)		6,000,000	2,400,000	3,600,000	103	4,614,800	1,845,920	2,768,880	

-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공유 대회(서면) : '21. 12. 22.

□ 2021년 운영 개선사항

분야	개선 세부내용
① 도민 설문조사 실시 (연간운영계획 수립 전)	·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연간 운영계획 수립 전, 도민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반영 : ① 공모규모 확대, ② 주민자치형 신설, ③ 사업지원 강화 등
② 공모금액 대폭 확대	· 공모금액 대폭 확대(31%↑) : '20년 130억원 → '21년 170억원
③ 주민자치 지원 강화	· 주민자치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회 등 체계적 지원 강화 → ① 주민자치형 공모유형 신설 : '21년 60억원 ② 주민자치지원단 구성·운영(민관협업)으로 주민자치회 지원 ③ '지역 디자이너 양성' 사업 실시 : '21년 신규 사업
④ 민간 주도성 강화	· 도민이 주도하는 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조례개정('21.11.4.) → ① 민간인 공동위원장 도입 : 현행 단독 위원장 행정부지사 ②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 확대 : 100명 → 150명 ③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다양화 : 사회적 약자 참여보장 명시 ④ 사업의 평가 강화 : 공동체협력지원가, 제안자 등 현장점검 참여
⑤ 제안사업 질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사업 위주가 아닌 공동체 결속을 위한 사업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역량 강화 → ① 도민예산학교 조기 시행 : '20년 8월 → '21년 4월 시행 ② 참여예산 기구 구성 강화 : '21년 1개 분과, 위원 59명↑ ('20년 8개 분과 91명 → '21년 9개 분과 150명) ③ 제안사업 컨설팅 강화를 위한 모의심사 진행 : '21년 도입 ④ 참여예산위원 위촉 전 예산 교육 이수 의무화 : '21년 도입

《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분	2021년	2022년																												
공모 유형	▶ 4개 유형, 170억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th>예산액</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도민 주도형</td><td>도정참여형</td><td>50억 원</td></tr> <tr> <td>도-시군연계형 (도 40, 시군 60%)</td><td>50억 원</td></tr> <tr> <td>청년참여형</td><td>10억 원</td></tr> <tr> <td colspan="2">주민자치형 (도 40, 시군 60%)</td><td>60억 원</td></tr> </tbody> </table>	유형		예산액	도민 주도형	도정참여형	50억 원	도-시군연계형 (도 40, 시군 60%)	50억 원	청년참여형	10억 원	주민자치형 (도 40, 시군 60%)		60억 원	▶ 5개 유형, 170억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th>예산액</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도민 주도형</td><td>도정참여형</td><td>40억 원</td></tr> <tr> <td>도-시군연계형 (도 30, 시군 70%)</td><td>50억 원</td></tr> <tr> <td>청년참여형</td><td>20억 원</td></tr> <tr> <td>생활안전형(신설)</td><td>20억 원</td></tr> <tr> <td colspan="2">주민자치형 (도 30, 시군 70%)</td><td>40억 원</td></tr> </tbody> </table>	유형		예산액	도민 주도형	도정참여형	40억 원	도-시군연계형 (도 30, 시군 70%)	50억 원	청년참여형	20억 원	생활안전형(신설)	20억 원	주민자치형 (도 30, 시군 70%)		40억 원
유형		예산액																												
도민 주도형	도정참여형	50억 원																												
	도-시군연계형 (도 40, 시군 60%)	50억 원																												
	청년참여형	10억 원																												
주민자치형 (도 40, 시군 60%)		60억 원																												
유형		예산액																												
도민 주도형	도정참여형	40억 원																												
	도-시군연계형 (도 30, 시군 70%)	50억 원																												
	청년참여형	20억 원																												
	생활안전형(신설)	20억 원																												
주민자치형 (도 30, 시군 70%)		40억 원																												
사업 강화	▶ 제안단계 컨설팅 부재 ▶ 사업 제안단계 주민 참여 ▶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개최 ▶ 도민투표 실시 (‘20년 1,367명, ‘21년 3,398명 투표) ▶ 참여 인센티브 부재	▶ 맞춤형 컨설팅단 구성 · 도민주도형 : 도민예산학교 · 주민자치형 : 공동체협력지원가 ▶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사업점검단 및 예산바로쓰기 도민 감시단 활용 모니터링 실시하여 집행 평가 단계 보완 ▶ 제안대회 확대·운영 : 청소년, 청년 ▶ 도민투표율 제고를 통한 우수 사업 채택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통한 투표홍보 활동, 지역 네트워크 활용한 적극 홍보 - 학교, 도서관 및 주민센터 등 최일선 주민접촉기관 활용한 투표 장려 - 투표방법 및 상정 사업 간소화로 투표 편의성 제고 ▶ 주민제안 참여 인센티브 제공 - 제로페이 상품권																												
홍보· 교육 강화	▶ 제도에 대한 설명 위주의 홍보 ▶ 도민예산학교 운영 : 오프라인 강의	▶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 파급효과를 강조한 홍보 실시 - 아동·청소년 대상 주민참여예산교육 ▶ 도민예산학교 - 교육대상별 온라인 교육 병행 실시 - 도 재정여건 등 설명(예산담당관)																												
윤 내 화	▶ 제안사업 검토 · 사업부서 및 분과위원회 1회 심의 ▶ 예산연구회 -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 제안사업 숙의·토론 강화 · 부서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의 심화 - 각 분과위원회 심의시 예산담당관실 참여, 의견제시 · 사업선정 후 각 실국별 도의회 심의 대비, 사전보고 ▶ 예산연구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Ⅲ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

비전

지방재정의 민주성 · 책임성 · 투명성 강화

목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 운영

추진전략

①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공모유형 체계화

②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로 사업역량 강화

③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교육

④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①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공모유형 체계화

○ 공모규모 : 5개 유형, 170억원

- 최고한도액 설정 · 공표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단위 : 억원)

합계	도민주도형				주민자치형
	도정참여형	도-시군연계형	청년참여형	생활안전형*	
170	40	50	20	20	40

★ 신설

○ (생활안전형 신설) 생활 안전 분야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해당 분야 사업 수요증가, 안전경남 도민행복 증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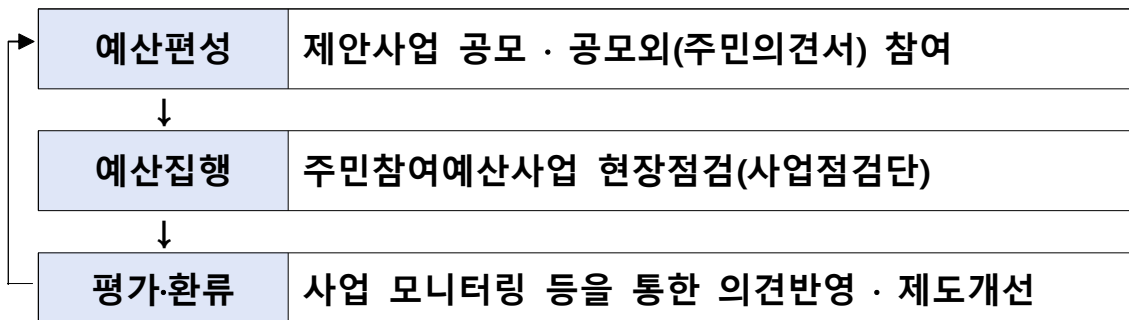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 지역 치안 관련 지원사업 발굴

○ (청년참여형 증액)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청년특별도 경남만들기 추진 가속화(10억→20억)

- 청년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 발굴
- 청년 참여예산 제안대회(가칭) 개최, 청년 정책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②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로 사업역량 강화

- (맞춤형 컨설팅단 구성·운영) 사업 제안단계에서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제안사업 질 향상으로 채택률 제고
 -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 취약계층 지원 및 공동체 결속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
 - 운영방법
 - ① 도민주도형 제안사업 - 도민예산학교 활용, 컨설팅 신청에 따른 지원
 - ② 주민자치형 제안사업 - 공동체협력지원가를 활용한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회의 등 사업발굴시 컨설팅 지원
- (예산 전 과정 참여 활성화) 예산 전 과정에 도민 참여 보장,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연계하여 지속적 평가·환류 모니터링 실시(뉴딜추진단 협업)
- (제안대회 확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 참여 역량 제고
- (도민투표율 제고) 지역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참여를 통한 도민투표율 제고, 주민 파급효과 높은 사업 채택
 - 투표방법 및 상정사업 표기 간소화로 투표 편의성 제고

- (제안 참여 인센티브 제공)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우수제안 선정, 제로페이 상품권 지급

③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교육

- (맞춤형 홍보 · 교육 강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한 변화 및 파급 효과를 강조하는 홍보를 보완 · 강화하여 실질적 참여 촉진
 - 제도개선 사항, 주민참여 절차,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변화 등
 - 학교, 주민자치회 등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 교육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교육청, 시군 등 협업)
- (온라인 교육 적극 활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민예산학교 과정 중 온라인 · 모바일 등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제공 등 주민편의 도모
 - 도 재정여건 및 예산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 보완(예산담당관 협업)

④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 (제안사업 숙의·토론 심화) 필요시 제안자 설명, 현장 확인, 사업부서 검토 등 충분한 숙의 · 토론 과정 진행
 - 분과위원회 심의시 예산담당관실 참여, 도 재정 프로세스 및 여건 설명 등 ‘주민참여예산위원-소관부서-예산실’ 간 종합적 논의 심화 (예산담당관 협업)
 - 도의회 심의 대비, 사업선정 후 실국별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 (협업강화) 제안사업 다각적 검토 및 제도 운영 관련 협업 추진
 - 소관 부서, 교육청, 시군, 관련 단체 등과 적극 연계 · 협업하여 제도 운영
 - 소관부서 지정에 장시간 소요되어 지정 방법 변경
 - * (기존) 사회혁신추진단→소관부서 지정 (변경) 사회혁신추진단→소관 실국본부 분류→소관부서 지정
- (우수사례 공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격차 해소, 예산연구회를 통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IV 세부 운영계획

1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

□ 규 모 : 170억원

(단위 : 억원)

합계	도민주도형				주민자치형
	도정참여형	도-시군연계형	청년참여형	생활안전형	
170	40	50	20	20	40

□ 참여자격 : 경남 도민

※ 경상남도·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참여방법

○ 공 고 : 2022. 2월말

○ 집중공모기간 : 2022. 3. 2. ~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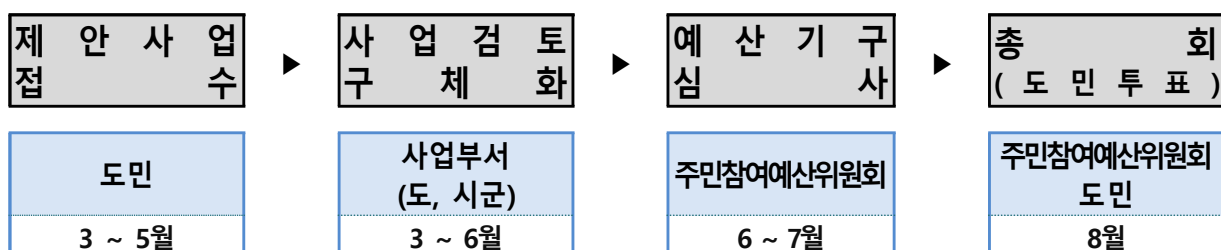
※ 연중 상시접수, 집중공모기간 이후 접수분 차년도 심사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우편/방문(제안신청서 작성·제출)

선정 불가 사업 공통 기준 안내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중복사업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 개인·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 추진절차



□ 유형별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참여방법
도 민 주도형	도정참여형 (40억 원)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사업) -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	도민제안
	도-시군 연계협력형 (50억 원) (도 30% 시군 70%)	- 도와 시군 연계 추진 사업 -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공모,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시군 소관 업무	
	청년참여형 (20억 원)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	
	생활안전형 (20억 원)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交通安全 등 주민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자치형 (40억 원) (도 30% 시군 70%)		-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지역회의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주민자치회 읍·면·동

1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① 도정참여형(40억원)

- (단위사업규모) 일반사업 5억원, 행사성 사업 1억원 이내
- (대상사업) 도민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 소관 사업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 사업)
- ※ 특정 시군에 적용되는 사업(시범사업 등) 등일 경우 시군비 매칭 가능
-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
-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관광, 환경, 도시재생 등
- ※ 시군사무를 도정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 도-시군연계협력형으로 이관

- 제안사업 접수 후 도 소관부서 검토,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민
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 선정

○ 세부 추진일정

① 사업신청	2022. 3 ~ 5월
• 신청자격 : 경남도민 • 신청내용 : 사업신청서(사업개요,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② 제안사업 분류	2022. 3 ~ 5월
• 사업접수와 동시에 소관부서로 배분, 법령위배 및 중복사업 여부 등 검토	
③ 도 사업부서 검토	2022. 3 ~ 6월
• 검토내용 - 법령 및 조례 위반여부, 중복사업 여부, 도 소관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도 전역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	
④ 분과위원회 등 심사	2022. 6 ~ 7월
[심사기준] ▶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 사업의 기대효과가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 도정 4개년 계획, 도지사 공약사항, 경남형 뉴딜사업 등 도 역점 추진분야 우선 ▶ 선정 불가 대상 사업 확인	
• 서면심사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여부 심사 - 분과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분과별 사업한도액*(사업접수건수, 사업비 등 반영하여 결정) 120% 범위내 사업 선정, 총회 상정 ※ 심사시 예산담당관실 참여하여 의견제시 - 유사사업은 제안취지를 살려 도 전역사업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 통폐합 ※ 통폐합 사업 한도액 : 일반사업 7억 원, 행사성 사업 2억 원 - 수혜범위가 1개 시군으로 제한되는 경우 가급적 총회 상정 지양 ※ 단, 시범사업은 가능 • 현장확인(필요시) -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사진첨부) 작성 후 사업 선정	
⑤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2022. 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도민투표 - 모바일, 재택 PC, 총회 현장 PC 등 ※ 투표방법과 투표권 행사 수는 상정사업수에 따라 결정	
⑥ 예산안 편성	2022. 9 ~ 12월

② 도-시군연계협력형(50억원)

- (단위사업규모) 일반사업 3억원,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 사업별 최대 30%까지 도비 지원 시군별 도비 지원 한도 : 5억원(총액 기준)

- (대상사업) 시군 단위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시군 소관 사업

- 도와 시군 연계 추진 사업
- 공모,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등

- 제안사업 접수, 시군(1차) · 도(2차) 소관부서 검토, 시군 주민 참여예산기구 우선순위 선정, 분과위원회 심사 후 도민투표를 통해 최종사업 선정

- 세부 추진일정

① 사업신청	2022. 3 ~ 5월
• 신청자격 : 경남도민 • 신청내용 : 사업신청서(사업개요,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② 제안사업 분류	2022. 3 ~ 5월
• 사업접수와 동시에 해당 시군으로 배분, 법령 위배 및 중복사업 여부 등 검토	
③ 시군(★) 사업부서 검토·제출	2022. 3 ~ 6월
• 검토내용 - 법령 및 조례 위반여부, 중복사업 여부, 시군 소관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시군 사업부서 검토시 도 소관부서 검토의견 조회 -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 ※ 시군에서 선정된 사업일지라도 법령 도 조례 등에 위배될 경우 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선정 프로세스에 의거 추진 • 추진방법 : 서면심사 → 현장확인 → 본심사(도정참여형과 동일)	
④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	2022. 6월
• 검토내용 - 법령 및 조례 위반 여부, 중복사업 여부, 사업비 재검토 - 유사사업 통폐합(통폐합 사업 한도액: 일반사업 5억 원, 행사성 사업 1억 원),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 등	

⑤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2022. 6월**

- 우선순위 선정 결과 제출
 - 시군 및 도 사업부서 검토를 거친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하여 제출

⑥ 분과위원회 등 심사**2022. 6 ~ 7월****[심사기준]**

- ▶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및 타 시군 시너지 효과 유발 사업 우선
- ▶ 사업의 기대효과가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 ▶ 도정 4개년 계획, 도지사 공약사항, 경남형 뉴딜사업 등 도 역점 추진분야 우선
- ▶ 선정 불가 대상 사업 확인

•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 제안서, 시군 사업부서 및 도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 심사
- 분과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분과별 사업한도액*(사업접수건수, 사업비 등 반영하여 결정) 120% 범위내 사업 선정, 총회 상정
 - ※ 심사시 예산담당관실 참여, 의견제시
- 유사사업은 제안취지를 살려 도 전역사업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 통폐합

⑦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2022. 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도민투표
 - 모바일, 재택 PC, 총회 현장 PC 등
 - ※ 투표방법과 투표권 행사 수는 상정사업수에 따라 결정
 - ※ 투표결과에 따라 사업선정하되, 시군별 편차가 극심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

⑧ 예산안 편성 2022. 9 ~ 12월**③ 청년참여형(20억원)**

- (단위사업규모) 일반사업 3억원,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 (대상사업)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

-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창작 활동 지원 사업
-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복지 지원 사업 등
 - ※ **특정 시군에 적용되는 사업(시범사업 등)일 경우 시군비 매칭 가능**
 - ※ 시군사무를 청년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 도-시군연계협력형으로 이관

- 지역대학, 취업연수생, 경남청년네트워크 등 활용하여 청년 사업 집중 발굴
- 청년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가칭)를 통한 우수사업 채택
- 제안사업 접수 후 도 소관부서 검토,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민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 선정

○ 세부 추진일정

① 사업신청	2022. 3 ~ 5월
• 신청자격 : 경남도민 • 신청내용 : 사업신청서(사업개요,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② 제안사업 분류	2022. 3 ~ 5월
• 사업접수와 동시에 소관부서로 배분, 법령 위배 및 중복사업 여부 등 검토	
③ 도 사업부서 검토	2022. 3 ~ 6월
• 검토내용 - 법령 및 조례 위반여부, 중복사업 여부, 도 소관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도 전역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	
④ 분과위원회 등 심사	2022. 6 ~ 7월
[심사기준] ▶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 사업의 기대효과가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 도정 4개년 계획, 도지사 공약사항, 경남형 뉴딜사업 등 도 역점 추진분야 우선 ▶ 선정 불가 대상 사업 확인	
• 서면심사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여부 심사 - 분과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분과별 사업한도액*(사업접수건수, 사업비 등 반영하여 결정) 120% 범위내 사업 선정, 총회 상정 ※ 심사시 예산담당관실 참여, 의견제시 - 유사사업은 제안취지를 살려 도 전역사업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 통폐합 ※ 통폐합 사업 한도액 : 일반사업 7억 원, 행사성 사업 2억 원 - 수혜범위가 1개 시군으로 제한되는 경우 가급적 총회 상정 지양 ※ 단, 시범사업은 가능 • 현장확인(필요시) -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사진첨부) 작성 후 사업 선정	
⑤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2022. 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도민투표 - 모바일, 재택 PC, 총회 현장 PC 등 ※ 투표방법과 투표권 행사 수는 상정사업수에 따라 결정	
⑥ 예산안 편성	2022. 9 ~ 12월

④ 생활안전형(20억원) : 신설

- (단위사업규모) 일반사업 3억원,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 (대상사업)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관련 사업
-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 보호활동 사업
- 마을치안·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예방 사업 등

※ **특정 시군에 적용되는 사업(시범사업 등)일 경우 시군비 매칭 가능**

※ 시군사무를 생활안전형으로 제안한 경우, 도-시군연계협력형으로 이관

-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등 유관 기관·단체를 활용하여 생활안전 사업 집중 발굴
- 제안사업 접수 후 도 소관부서 검토,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민 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 선정
- 세부 추진일정

① 사업신청 2022. 3 ~ 5월

- 신청자격 : 경남도민
- 신청내용 : 사업신청서(사업개요,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② 제안사업 분류 2022. 3 ~ 5월

- 사업접수와 동시에 소관부서로 배분, 법령 위배 및 중복사업 여부 등 검토

③ 도 사업부서 검토 2022. 3 ~ 6월

- 검토내용
 - 법령 및 조례 위반여부, 중복사업 여부, 도 소관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도 전역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

④ 분과위원회 등 심사 2022. 6 ~ 7월

[심사기준]

- ▶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 ▶ 사업의 기대효과가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 ▶ 도정 4개년 계획, 도지사 공약사항, 경남형 뉴딜사업 등 도 역점 추진분야 우선
- ▶ 선정 불가 대상 사업 확인

• 서면심사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여부 심사
- 분과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분과별 사업한도액*(사업접수 건수, 사업비 등 반영하여 결정) 120% 범위내 사업 선정, 총회 상정
 - ※ 심사시 예산담당관실 참여, 의견제시
- 유사사업은 제안취지를 살려 도 전역사업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 통폐합
 - ※ 통폐합 사업 한도액 : 일반사업 7억 원, 행사성 사업 2억 원
- 수혜범위가 1개 시군으로 제한되는 경우 가급적 총회 상정 지양
 - ※ 단, 시범사업은 가능

• 현장확인(필요시)

- 1차 선정된 사업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사진첨부) 작성, 2차 심사 시 보고

⑤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2022. 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도민투표
 - 모바일, 재택 PC, 총회 현장 PC 등
- ※ 투표방법과 투표권 행사 수는 상정사업수에 따라 결정

⑥ 예산안 편성 2022. 9 ~ 12월

②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 추진방향

-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회의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사업발굴

○ 사업규모 : 40억 원 ※ 보조비율 : 도 30%, 시군 70%

- 단위사업규모 : 20,000천 원~50,000천 원
- 읍면동 수에 따른 기준액으로 시군별 한도액 배분

《 시군 배정액 산출내역 : 시군 읍면동 수에 따른 구간별 기본액 적용》

(단위 : 천원)

읍면동수	10개 이하	11~15개	16~20개	20~30개	31~40개	41개 이상
기본액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 주민자치형 사업 시군별 배정액 >

(단위 : 천원)

시군	읍면동수	배정액		
		계	도비	시군비
계	305	4,000,000	1,200,000	2,800,000
창원시	55	400,000	120,000	280,000
진주시	30	300,000	90,000	210,000
통영시	15	200,000	60,000	140,000
사천시	14	200,000	60,000	140,000
김해시	19	250,000	75,000	175,000
밀양시	16	250,000	75,000	175,000
거제시	18	250,000	75,000	175,000
양산시	13	200,000	60,000	140,000
의령군	13	200,000	60,000	140,000
함안군	10	150,000	45,000	105,000
창녕군	14	200,000	60,000	140,000
고성군	14	200,000	60,000	140,000
남해군	10	150,000	45,000	105,000
하동군	13	200,000	60,000	140,000
산청군	11	200,000	60,000	140,000
함양군	11	200,000	60,000	140,000
거창군	12	200,000	60,000	140,000
합천군	17	250,000	75,000	175,000

○ 사업제안 : 주민자치회, 읍면동(지역회의 등)

- ① 주민자치(위원)회 단위: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생활밀착형 사업발굴
- ② 읍면동 단위 :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역회의 등 통한 사업발굴

※ 지역회의는 각 시군 조례 및 여건에 따라 운영·구성한 읍면동 회의 체계 활용

【주민자치형 사업 공모시 지원사항】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지원
- 도민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홍보 지원
- **공동체협력지원가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사업 발굴 지원**

- ③ 제안사업 확정시 주민총회, 온·오프라인 주민투표, 주민동의서 등 읍면동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선정하되 최소 40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 대상사업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 지역의 특성(고유문화, 지리적 특성, 특산품 활용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등
- 읍·면·동 행정홍보사업(예 : 홍보 게시판 등), 시설 단순 개·보수 사업(가로등 정비, 도로보수 등), 사업연도 이후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취득사업(예 : 음수대 설치 등), 일회성 행사 개최 사업 지양

○ 사업선정

- 제안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읍·면·동 사업 선정,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 후 예산 편성지원

※ 제외대상 사업이 아닌 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지원

- 부적격 사업이 제안·선정되지 않도록 사업 컨설팅 및 심사 강화

○ 세부 추진일정

① 사업계획 시달(도→시군→읍면동)	2022. 3월
② 사업 발굴(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지역회의 등)	2022. 5월
•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지역회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 •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도민예산학교 운영 사업 발굴 프로그램 지원 ⇒ 공동체협력지원가 컨설팅 실시	
③ 시군 사업부서, 행정복지센터 검토 및 지역총회 등	2022. 6월
• 검토내용 : 실현가능성, 적격여부 등 검토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군 사무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행정 검토사항 설명, 실행가능 사업으로 구체화 등 주민과의 소통과정 운영 ※ 시군에서 선정된 사업일지라도 법령, 도 조례 등에 위배될 경우 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읍·면·동 사업 선정 제출(읍면동→시군→도)	2022. 7월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선정,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구성원 명단, 회의록, 참여자 서명부,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과서 등	
⑤ 주민자치형 사업 최종 승인(총회)	2022. 8월
• 도 주민참여예산 총회 보고 후 최종 승인	
⑥ 예산안 편성	2022. 9 ~ 12월

2 일반참여예산사업 운영

□ 운영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 목 적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경남도 일반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 전반에 대한 도민 참여도 제고
- 참여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도민 등
- 대상사업
 - 2023년 도 주요재정사업
 - 도 정책사업 중 30억원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1억원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 등

□ 운영방법

-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의견서 작성 후 도의회 제출
- 기타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 간담회, 예산연구회 활동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반영

3 기타 세부 운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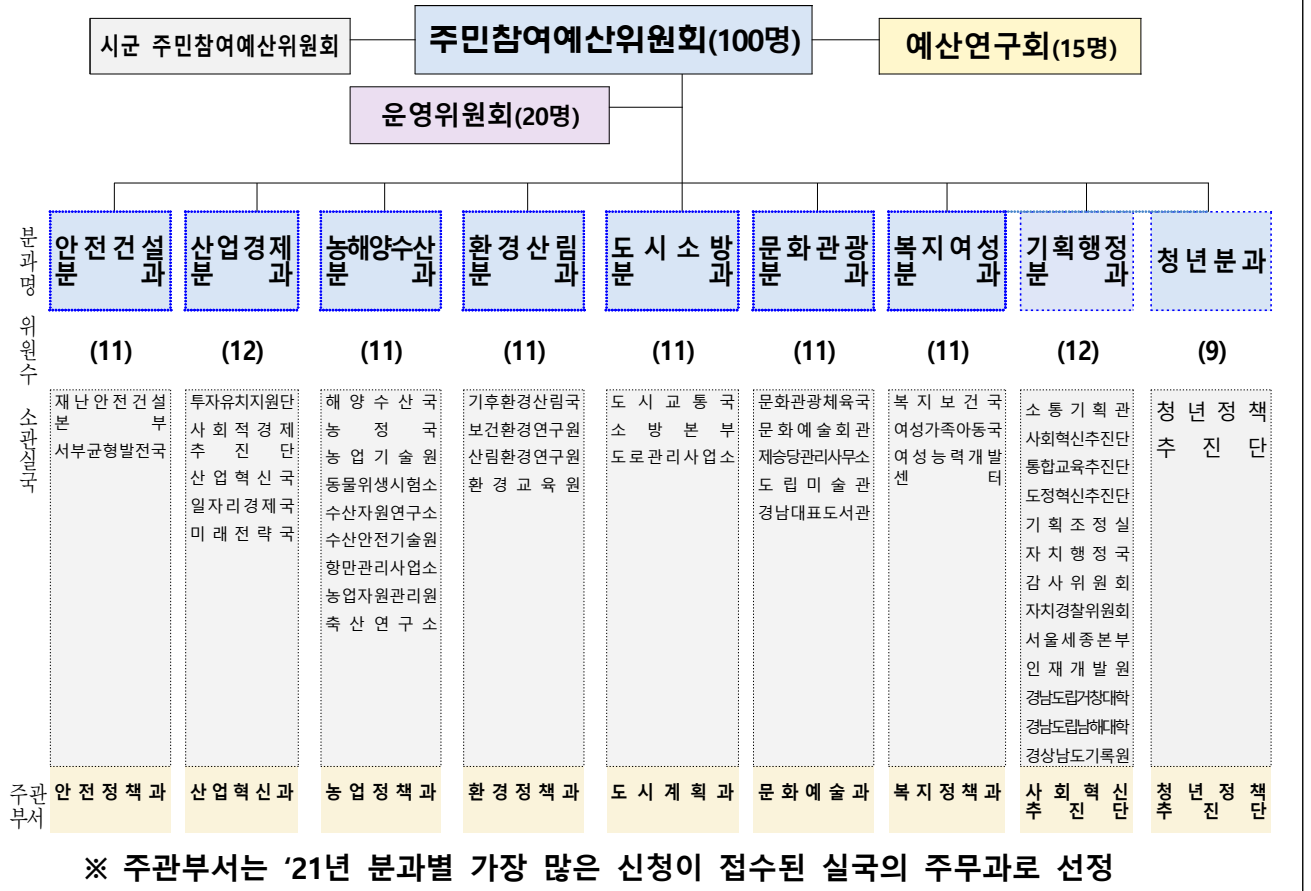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개 요

- 위원수 : 100명(당연직 16, 위촉직 84)
 - ※ '23. 1. 1.부터 150명 이내 구성 가능 <조례개정('21.11.4.)>
- 임 기 : 2년(2021. 1. 1. ~ 2022. 12. 31.)
- 임 원 : 3명 - 위원장(1)*, 부위원장(1), 간사(사회혁신추진단장)
 - ※ '23. 1. 1부터 공동위원장 2명(행정부지사, 위촉직 중 선출) <조례개정('21.11.4.)>
- 기 능
 - 예산편성 시 도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는 위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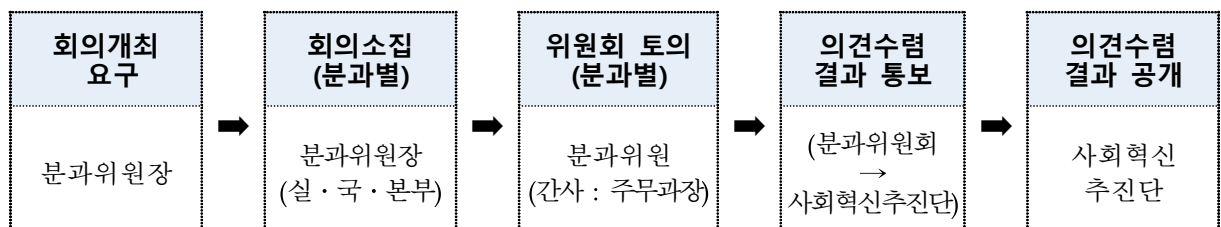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임 원 : 위원장, 부위원장 ⇒ 분과위원 중 호선

○ 기 능

- 분야별 현 실태 의견개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참여예산사업 현장방문·확인 및 참여예산사업 사업점검 등

○ 운영절차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성 : 20명(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부위원장)
- 기 능
 -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예산편성과 관련된 최종 의견서 작성
 -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등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
- ※ 소관부서 지정이 곤란할 정도로 명백히 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부적절한 사업에 관한 처리 방안 논의 등

□ 전문성 제고 방안

-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 위촉 시 예산학교(도, 시군) 이수자 필수
 - ※ 기존 위원, 매년 운영하는 예산학교 교육 참석 조치
- 위촉 위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전문교육 참석 의무화
- 교육 및 회의 참석율 저조(50% 미만) 위원 차기 위원 선정 시 연임대상에서 제외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 개최일시 : 2022. 7월 중(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장 소 : 미정
- ▶ 참석대상 :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관계공무원 200여명
(도 위촉직 위원 84, 시군별 5명이 내, 공무원 25명 등)
- ▶ 주요내용 : 세미나(주민참여예산 성과와 과제, 발전방향 모색),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 교육(사업평가, 사업 점검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토론, 우수 사례발표 등

□ 청렴성 제고 방안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이권 개입, 청탁 등 부정사례 발견 시 해촉
 - ※ 해촉사유 : 직무태만, 비밀누설, 민원야기, 품위손상 등
- 모든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청렴서약서 작성
- 본인이 제안사업 신청자일 경우나 관련자일 경우 심사 공정성을 위해 해당 분과위원에서 기피·회피·제척

②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성화

- 인 원 : 15명(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 그 밖에 지역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 운영

- 기 간 : 2022. 3 ~ 10월
- 대 상 : 일반도민(기관·단체 포함),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등
- 기 능
 - 도민의 주민참여예산제 인식 제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 집단지성을 활용한 도민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및 제안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시 예산학교 이수를 의무화하여 운영 실질화
 - 제안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 구체화 및 질 제고
- 운영계획
 - 도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여성단체, 커뮤니티, 학교 등 기관·단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자치분권 강화과정 개설
 - 도민 제안사업 채택률 및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청년·청소년의 도정 참여 역량조성을 위한 ‘(가칭)제안대회’ 개최

④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기 능

- 예산 전 과정 실시간 공개를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및 소통과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로 업무처리 효율 향상, 도민 알권리 충족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 과정 전산화 및 투명 공개
- 쌍방향 소통시스템 운영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 제안사업 신청, 신청내역 확인, 검토결과 공개, 도민평가, 도민 소통방 등 주민 의견수렴 및 피드백 기능 제공
- 예산데이터 시각화(인포그래픽)를 통해 알기 쉬운 예산 정보 제공

⑤ 주민참여예산 사업점검단 운영

○ 대상사업 :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157개 사업, 152억원)

○ 추진시기 : 2022. 9월 ~ 12월(서면 + 현장확인)

○ 사업점검단 구성 :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도민감시단 등 60 여명

- 도민주도형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뉴딜 추진단과 협업), 공동체협력지원가 등 합동 점검
- 주민자치형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주민 등 시군 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내용 : 사업 추진상황, 애로사항, 민원사항 등 사업점검

- (서면심사) 사업설명서, 계획서 등을 활용 분과위별 사업점검
- (현장확인) 서면심사 사업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 선정, 실시
·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을 현황, 예산낭비 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 사업완료 여부, 사업 효과성 등 중점 모니터링

- 직접 현장방문 후 결과보고서 작성(종합의견, 사진 등 첨부)
- 문제점 지적 위주 현장 방문 지양, 우수사업 발굴 위주로 선정하여 현장 확인
- (결과조치) 사업점검 결과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적기 추진 권고 등

Ⅵ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환류

- 우수 운영모델 발굴 등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 모색
-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기회 마련
- 우수사례, 토론회, 완료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의견 반영하여 지속적 제도개선

V 향후 추진일정

-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22. 2월말
- 주민제안사업 공모 · 선정 : 2022. 3 ~ 12월
 - 집중공모 : 2022. 3 ~ 5월
 -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 2022. 3 ~ 6월
 -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사 : 2022. 6 ~ 7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도민투표 : 2022. 8월
 - 예산안 편성 : 2022. 9월
 - 도의회 심의·의결 및 사업 확정 : 2022. 12월
- 도민예산학교 운영 : 2022. 3 ~ 10월
- 주민의견서 작성 · 제출 : 2022. 9 ~ 11월
- 주민제안사업 현장점검 : 2022. 9 ~ 12월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공유 : 2022. 12월

VI 행정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전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 참여 -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재정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도민 의견 청취 ○ 도민 공모사업 검토 협조(법률위배·중복여부 검토, 사업비 재산정, 구체화, 우선순위 등) *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확인 ○ 선정사업 예산안 편성시 실국별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설명 ○ 주민참여예산제 부서 담당자 지정 운영 ○ 단체(기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협조 ○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협조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 분과위원회 개최 및 결과제출 등 분과위원회 운영 협조 - 사업계획 공유, 심사, 토론, 회의록 작성, 결과 보고 등
예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 편성 협조 - 공모사업 및 예산편성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 적극 반영 ○ 도민 대상 교육시 도 재정여건 등 설명 및 분과위원회 개최 시 참석 협조 ○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협조
소통기획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 협조 -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 보도자료 제공 - 뉴미디어(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경남공감 등 활용 홍보
정보담당관	○ 사업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시 현장 투표 지원
행정과 인사과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운영(행정과) ○ 주민참여예산사업 유공자 및 우수제안자 표창(행정과, 인사과)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공무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표창 - 주민참여예산 공모 우수제안자(민간) 표창
청년정책추진단	○ 청년참여형 사업 발굴 지원
자치경찰위원회	○ 생활안전형 사업발굴지원
시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공모사업 참여(홍보) 협조 ○ 시군별 주민참여예산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도와 연계추진 - 도 사무, 시군 사무에 대한 제안사업 접수, 상호 연계처리 - 도민 공모사업에 대해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 및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협조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기구 구성 및 활성화 협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예산기구 구성(법적 의무화) - 주민참여예산 조례 정비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감시활동 등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로 예산 편성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형 사업 프로그램 지원 및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신청인 정보			
성 명		성 별	☐ 남 / ☐ 여
주 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우수제안자 선정 등) ○ 수집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체크)			
제안사업 내용			
분 야	☐ 안전.건설 ☐ 산업.경제 ☐ 농해양수산 ☐ 환경.산림 ☐ 도시.소방 ☐ 문화.관광 ☐ 복지.여성 ☐ 청년 ☐ 기타()		
사 업 명			
사업위치	☐ 경남도 전체 또는 2개 이상 시·군 사업(시·군명 :) ☐ 1개 시·군 사업(경남 시·군 도로명)		
소요예산	천원	사업기간	2023.00.00 ~ 2023.00.00(1년)
사업개요	☐ 사업명(사업내용 상세 기재) ※세부계획 별도 첨부 가능 ○ (사업목적 및 배경)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 (사 업 량) ○ (추진방법) ○ (사업위치) 현장사진 등 첨부 ○ (소요예산) 금 원 - (산출내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컨설팅신청	☐ 신청 ☐ 미신청 ※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제안사업을 구체화하여 드립니다. (단,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성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 위원회명 :

○ 사 업 명 :

○ 사업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목표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수혜대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사업비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 기타 의견

2022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서명)

주민자치형 사업 신청서(안)

사업제안 신청인				
* 개인정보는 제안사업 신청 관련 목적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음				
신청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등 대표	성명		연락처	
			이메일	
(읍·면)동장	성명		연락처	
			이메일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필요성 (제안취지 등)				
사업위치				
소요예산	백만 원			
산출근거	예시) ○ 재료구입 : ○외 중 × ○,○○○원 = 천원 ○ ○			
사업기간	2023. 월. ~ 2023. 월.			
사업내용 (구체적 추진방법 등)				

사 업 내 용 (구 체 적 추진방법 등	
기 대 효 과	
기 타 (사진 등 설명자료)	
2022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주민자치형 사업 추진 구성원 명단(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동의는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내용 참조

연번	성명	성별	출생연도	연락처	소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서명	서명
1					주민자치 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같음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5년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u>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u>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참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같음

제공받는 자	경상남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연구단체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참여예산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u>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동의란 서명 등으로 같음함

※ 주민들에게 설명하실 자료입니다.

주민자치형 사업 평가표(안)

항 목	평가지표	평가 점수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100	80	60	40	20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타당성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효과성	사업추진 시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가 적절한 규모입니까?					
수혜대상	이 사업은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합 계		점				

2022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시군 심의 시 자율적 변경 사용 가능

2023년 예산편성 주민의견서(서식)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의 필요성(현안·불편 사항) 또는 기대효과

○

○

☐ 사업내용

○

○

※ 기타 참고사항

- 사 업 량 :

- 추정사업비 :

☐ 위치도

※지도, 약도로 정확한 위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요망

☐ 의견서 제출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